

의안번호	제488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 
관한 조례안

발의자	박지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8일

#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8일  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·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자생하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의 보호와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다.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보호수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## 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
- 나. 비용 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관련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수”란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.
2. “관리기관”이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·군수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를 통한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보호수 지정 신청) ①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호수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 신청기준·절차·방법 및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보호수 표지)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제6조(보호수 관리)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·허가를 하기 전에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,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도로, 상하수도 시설, 전기·통신시설, 건축 등의 사업행위
2.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3.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해(害)가 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

②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된

가격으로 한다.

제7조(보호수 지정해제 신청) ①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보호수가 수명을 다해서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의 신청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관리실태 파악) 도지사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임)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【산림보호법】

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(이하 “보호수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4.>

1. 지정 사유
2.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
3.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, 나무나이, 나무높이, 가슴높이지름, 수관폭(樹冠幅) 등
4.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~ ⑤ (생략)

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. 8.]

#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도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·확대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수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도내 보호수의 보존·증식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 -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 의거 도내 보호수의 보존·증식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 : 1,176,385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235,277천원 소요 예상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(도 30%, 시군 70%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-		-	-	-	-	-	-
세 출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1,176,385
(안 제3조) 보호수 정비사업 지원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1,176,385
재원 조달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70,583	70,583	70,583	70,583	70,583	352,915
	지방세	70,583	70,583	70,583	70,583	70,583	352,915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·군비		164,694	164,694	164,694	164,694	164,694	823,47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